

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3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1. .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1. 제 안 이 유

제천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,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,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, 보완하고자 함.

2. 주 요 내 용

- 사회단체의 보조사업과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(제5조)
- 사회단체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수는 11인이내로구성(제5조제2항)
- 위원은 시의회 의원, 시민단체 관계자, 전문가, 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(제5조제3항)
- 심의위원회위원 위촉시 공개모집절차 도입(제5조제3항)
- 위원회의 기능신설(제5조의 1)
- 회의 운영신설 (제5조의 2)

3. 근 거 법 령

- 지방재정법시행령(2005. 6. 30 대통령령 제18903호)
- 200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

4. 의 안 전 문 : 불 입

5.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불 입

6. 기타 참고자료 : 불 입

7. 입법예고 사본 : 불 입

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천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자,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, 공개모집에 응모한자,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천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제천시 의회의원

2.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

3.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

4. 업무 관련 공무원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 1 (위원회의 기능)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

2.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

3.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

4.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공무원 및 사회단체관계자로 하여금 의견을 듣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 2 (회의 운영)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
④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⑤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,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 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기존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(신 설)

- ② 위원회는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공무원 및 사회단체관계자로 하여금 의견을 듣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.
- 제5조의 2(회의 운영)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- ④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들 수 있으며,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⑤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,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 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원회 구성 및 기능) ①제3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되, 위원회는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.</p> <p>②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회단체 육성과 관련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.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3. 각급사회단체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계획검토 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<p>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공무원 및 사회단체관계자로 하여금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(신 설)</p>	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천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자,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자, 공개모집에 응모한자,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천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천시 의회의원 2.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3년이상 활동경력이 있는자 3.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4. 업무관련 공무원 <p>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</p> <p>제5조의 1(위원회의 기능)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.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.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참 고 자 료

【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감사결과】

□ 감사개요

- 주민감사청구 : 충북 증평군. 읍 초중리 9-1 김 영호
- 감 사 기 간 : 2005. 9.20 - 9.23(4일간)
- 감 사 반 : 충북도 공직윤리담당의 3명, 도민감사관 연창희
- 감사청구사항
 - 증평군 보조금 배정절차상 민의수렴부족과 심의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어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결정과 공정성, 투명성 확보 곤란
 - 관주도의 일방적 심사로 일부단체 편중배정과 공익성 없는 행사비 지원으로 보조금 배정의 형평성 상실

□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

- 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40%를 특정단체들의 운영비로 지원 및 배분
 - 사회단체 운영비의 지원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, 엄격한 심사기준마련으로 공정성확보
 -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“ 기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공익성 시비를 낮고 있는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“증평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”을 구체적으로 명시
 -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같은 과목으로 일괄계상하고 위원회에 자료 제공
 - 보조금 집행시 인건비를 제외한 일정경비는 교부조건에 카드사용 의무 명시
 - 사회단체에 보조금 교부결정시 인건비 지원비율을 적정비율로 조정하고 단순 인건비는 최소경비로 집행되도록 철저히 심사
-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형식적 구성과 절차상 문제
 -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의 구성인원을 9인 내외로 하고 소속 공무원을 1/3 이내로 하도록 권고 하고 있는 바 상기내용이 반영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 확보

관 계 법 령

지방재정법시행령

(2005. 6. 30 대통령령 제18903호)

제24조(공공기관의 범위등)

③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한다.

200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

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(제8조 관련)

○ 위원회 구성·운영

▶ 사회단체보조금지원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,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

* 시군구 9인내외로 구성

▶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(지방의원 제외)을 1/3 이내로 구성 (권고사항)

○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

▶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

▶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

▶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의 정산외에 보조사업의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결정에 반영(권고 사항)

▶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등

【타시군 운영 현황】

- 청주시 :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대행(조례 제7조)
- 충주시 :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대행(조례 제8조)
- 옥천군 : 지방재정계획 및 민간투자심의 위원회에서 대행(조례제4조)
- 단양군 : 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(조례 제10조)
 - 위 원 장 : 부군수
 - 당연직 위원 : 기획감사실장, 자치행정과장, 재정경제과장
 - 위촉직 위원 : 의회의원,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등
- 음성군 :위원11인으로 구성 (조례 제4조)
 - 위 원 장 : 부군수
 - 부위원장 : 위원중 선출
 - 위 원 : 공무원은 전체위원 2/1 이내
민간전문가, 대학교수, 시의회 의원
- 보은군 :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(조례 제 10조)
 - 위 원 장 : 부군수
 - 부위원장 : 기획감사실장
 - 당연직 위원 : 재무과장, 사회경제과장, 주민자치과장
 - 위촉직 위원 : 군의회의원, 민간전문가
- 진천군 : 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(조례 제 10조)
 - 위 원 장 : 부군수
 - 부위원장 : 기획감사실장
 - 당연직위원 : 환경과장, 농정과장, 건설과장
 - 위촉직위원 : 지방의회의원,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

【기타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장】

- 시민자치정책센터 (하승수 변호사): 공무원, 시의원 비율을 1/5이하로
- 울산참여 연대 : 민간인사 비율 2/3 이상
-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: 공무원,시의원 비율 1/3이하로

제천시공고 제 2005 - 545 호

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05년 9 월 9 일

제 천 시 장

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

1. 조 례 명 :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

2. 개정이유

제천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,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,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, 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사회단체의 보조사업과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구성(제5조)

· 사회단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는 11인내외로 구성 (제5조 제2항)

· 위원은 시의회의원,시민단체관계자,전문가,시공무원등으로구성(제5조제3항)

· 심의위원회 위촉시 공개모집절차 도입(제5조 제3항)

○ 위원회의 기능(제5조의 1)

○ 회의 운영 (제5조의 2)

4. 의견서 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05년 9 월 30 일 까지 제천시장(참조 기획감사실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: ☎640-5032. FAX 640-5029 E-메일: www. okjc. net